소송 등의 판결·결정(3심 판결)

1. 사건의 명칭	손해배상
2. 원고·신청인	김재혁 외 8명
3. 판결·결정내용	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4. 판결·결정사유	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함
5. 관할법원	대법원
6. 판결·결정일자	2019년 11월 28일
7. 확인일자	2019년 11월 29일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-